

호주 시청각 공동제작 지원제도 분석 및 한-호주 FTA에 대한 시사점

■ 여혁종* · 전용욱**

2006년 12월 한-호주 정상회담 시 FTA 민간공동연구 출범에 합의하며 시작된 한-호주 FTA에 대한 논의는 2009년 5월, 제1차 공식협상이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5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고, 금년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호주는 공동제작에 있어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로 지금까지 10여 개국과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도,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과 공동제작 협정문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호주는 공동제작에 관련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정착되어 있는데, 한-호주 FTA 공동제작 협상에 대한 전략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을 위해 호주의 공동제작 정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호주와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호주의 국제공동제작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호주의 공동제작 정책을 집행하는 Screen Australia에서 발간한 국제공동제작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공동제작물의 제작을 위한 호주의 공동제작 협정의 주요 요건을 분석하여 한-호주 FTA 협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협력실 전문연구원, (02)570-4181, hyukjong@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협력실 연구원, (02)570-4473, bloch@kisdi.re.kr

목 차

I. 서론 / 27
II. 국제공동제작의 배경 및 이론적 논의 / 28
1. 국제공동제작의 개념 / 28
2. 국제공동제작의 추진배경과 의의 / 30
III. 호주의 국제공동제작 지원제도 및 현황 / 32
1. 개요 / 32
2. 국제공동제작 지원제도 / 33
IV. 호주의 국제공동제작 가이드라인 및 기 체결 공동제작 협정 분석 / 38
1. 개요 / 41
2. 자격 규정 / 41
3. 창의적 기여도 포인트 테스트 / 46
4. 지원절차 및 심사 / 49
5. 공동제작자 간 협약 / 51
V. 결론 / 53

I. 서론

최근 급변하는 영상물 제작 환경과 제작비 급증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제공동제작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국제공동제작은 국내시장이 작거나 제작역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국가들 간의 전략적 협력방안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콘텐츠 제작역량이 높은 국가들도 공동제작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역시 한류가 주춤해지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제작을 활성화하

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동제작물이 정부의 차별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공동제작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인정절차는 공동제작자 당사국 간에 체결되는 공동제작 협정에 근거한다. 공동제작 협정은 정부 간 협정으로서 공동제작물의 유통(국산물 인정 등), 보조금에 대한 접근 및 단기채류 등에 대해서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그리고 공동제작 협정에 근거하여 상대국에 따라 자본투자 비율, 연출·출연자 국적 비율 등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공동제작물에 대한 내국민 대우 혜택은 공동제작 협정 당사국 간에 국한된 양자적 차원의 특혜로서 WTO 규범의 근간이 되는 최혜국 대우 원칙(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MFN treatment)과는 양립할 수 없어 MFN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 시청각 공동제작에 대한 MFN 면제를 명시하지 않아, 한 국가와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WTO 회원국에게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WTO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S) 제5조에서는 자유무역 협정(FTA)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FTA 틀 안에서 체결되는 공동제작 협정에 대해서는 차별적 혜택 부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체결한 FTA 중에 칠레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FTA에서 공동제작 협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6년 12월 한-호주 정상회담 시 FTA 민간공동연구 출범에 합의하며 시작된 한-호주 FTA에 대한 논의는 2009년 5월, 제1차 공식협상이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된 이후 현재까지 5차례의 협상이 개최되었고, 금년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호주는 공동제작에 있어 오랜 전통을 가진 나라로 지금까지 캐나다,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싱가포르, 영국의 8개국과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였고, 프랑스, 뉴질랜드와는 공동제작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2010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발효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도,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과 공동제작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는 공동제작에 관련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 정착되어 있는데, 한-호주 FTA 공동제작 협상에 대한 전략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을 위해 호주의 공동제작 정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호주와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본고에서는 호주의 국제공동제작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호주의 공동제작 정책을 집행하는 Screen Australia에서 발간한 국제공동제작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공동제작물의 제작을 위한 호주의 공동제작 협정의 주요 요건을 분석하여 한-호주 FTA 협상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국제공동제작의 배경 및 이론적 논의

1. 국제공동제작의 개념

국제공동제작은 단일한 개념으로 정립되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국

가의 제작사들이 ‘제작비와 제작 업무를 분담하여 영상제작물을 제작하여 그 권리를 공동제작자가 공유하거나 나누어 갖는’ 제작 방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1) 2)} 이처럼 국제공동제작은 영상물 제작을 위한 재원, 내용, 기술, 시설적 자원의 다양한 국제적 공조를 일컫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국제 공동제작에 대한 일반적인 분류 방식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공동제작의 분류

구분	자본 참여 수준	제작 참여 수준
사전판매 (pre-sale)	다액을 부담하는 한 주체가 주도적으로 출자	소액참여자는 출자와 내용 검토에만 참여
프로그램 교환 (swapping)	하나의 시리즈를 공동제작자가 나누어 제작 후 프로그램 교환. 소재교환도 가능	
공동자본 투자 (co-operation)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	각 분야를 공동으로 작업. 그러나 주제작자와 준제작자의 구분이 있음
트위닝(twinning)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	작품제작은 각기하는 형태
컨소시엄	공동제작 참여자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 진행	
공동제작 (co-production)	순수 공동제작은 공동제작자가 각자 스텝을 내어 하나의 팀을 결성하여 제작하는 경우이나, 국제공동제작에 이행되는 경우는 극히 적으며, 일반적으로 분야별로 기획, 제작, 후반부 작업 등을 나누어서 진행	

자료: 윤선희, “다매체시대 영상산업의 문호개방과 국제공동제작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1999, p.6.

미국독립제작사협회에서는 국제공동제작을 사전판매(pre-sales)와 공동제작(co-production) 및 합작(co-venture)으로 구분한다. ‘사전판매’란 편집에 대한 조정이나 제작작업은 공유하지 않고, 제작이 완결되기 전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권을 판매하는 것이다. 이는 ‘합작투자’라기보다는 일종의 판매형태로 볼 수 있다. 한편, 공동제

1) 윤재식 외(2007), p.46.

2) 영국의 BBC는 공동제작을 ‘제작비와 제작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영상제작물이라는 상품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그 상품의 제 권리를 공동제작자가 나눠 갖는다’고 정의하였다.

작(co-production)은 두 국가 간의 공식적인 협약을 기반으로 제작 단위들 간에 재정과 편집의 분담관계가 이뤄지는 것을 말하며, 합작(co-venture)은 국가 간 협약 없이 제작사들이 각자 개인적인 시장에 적합한 작품을 위해서 함께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³⁾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는 공동제작과 합작에 대한 뚜렷한 구분 없이 이 둘을 ‘공동제작’이라는 용어로 나타내고 있다.

2. 국제공동제작의 추진배경과 의의

국제공동제작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원 확대와 제작비 조달을 위한 투자유치라는 목적을 위해 적극 추진되고 있다. 또한 영상제작물의 유통과 제작과정에서의 국제적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공동체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증대시키고,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상호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동제작이 나타난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제작 산업 환경을 가진 국가들 간의 협동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원을 공동출자하는 것이 사용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캐나다의 경우, 미국 문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국의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40여 개국과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는 등 공동제작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왔다. 유럽에서도 역시 초기 공동제작은 유럽 지역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특수한 소재를 만들어내고, 외국 프로그램의 영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공동제작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제작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제작비 급등과 글로벌 유통을 염두에 둔 경제적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BBC와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공영방송사들은 대형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의 경우 외국에서 공동제작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 또한 호주의 공영방송사도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제작비 예산 삭감을 보충하기 위해 외국 투자

3) 캐나다 또는 프랑스처럼 국가 간 공식적 공동제작 협정이 활발한 경우, 협정에 준하는 유형을 공식적인 공동제작(official co-production)으로,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공동제작은 합작(co-venture)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파트너와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형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의 국제공동제작은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국제공동제작은 다양한 이유로 추진되는데, 국제공동제작의 장점을 살펴보면 크게 경제적 차원, 문화적 차원, 실무적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경제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첫째, 재원의 공동출자를 통한 비용 분산의 경제적 이득이다. 둘째, 공동제작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된다. 공동제작 상대국 시장에서의 접근 가능성뿐 아니라, 제3국의 파트너가 참여할 경우, 제3국 시장으로의 접근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셋째, 외국 정부의 지원제도, 보조금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아진다. 공식적인 계약을 통해 제작된 공동제작물이 각각의 공동제작 국가들에게 자국 제작물로 인정된다면, 각국 정부의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캐나다, 유럽과 같이 공동제작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많은 국가일수록 다양한 기회가 있다.⁴⁾

한편, 문화적 차원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공동제작을 통해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특히 정치, 경제 공동체를 목표로 하는 유럽연합의 경우, 공동제작은 유럽 공동체의 문화적 공감대와 동질감 형성을 공동제작의 가장 큰 의의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국가 또는 민족문화 상품으로서의 영상제작물을 그보다 상위의 지역문화(regional culture) 또는 세계적 문화 상품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실무적 차원에서 공동제작은 몇 가지 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공동제작을 통해 외국 로케이션 촬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술적 차원에서 공동제작 상대국으로부터 지식, 노하우를 습득하고, 제작인력의 국제적 안목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국제공동제작에 이 같은 긍정적인 측면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공동제

4) 국제공동제작 경험을 갖춘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의 제작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제작자들이 재정과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국제공동제작의 가장 큰 장점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식 외(2007), p.55.

작은 현실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공동제작의 문제점은 첫째, 협상비용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공동제작은 초기 공동제작 협상의 조정과정이 복잡하고, 공동제작물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 공조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이 상당히 높다. 또한 공동제작을 위한 조건을 맞추기 위해 양국 모두에서 촬영 및 편집 등의 작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둘째,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통제력과 문화적 특수성을 상실하게 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공동제작물은 필연적으로 프로그램의 특징이나 인력에 관한 타협과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동제작물에서는 문화적 통합성(integrity)이 떨어진다. 이 점은 국제공동제작의 가장 큰 단점으로, 타협을 통해 만들어진 국제공동제작물은 양국시장의 시청자에게 제공은 될 수 있으나, 그 결과물이 양쪽 시청자 모두에게 공감대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⁵⁾

Ⅲ. 호주의 국제공동제작 지원제도 및 현황

1. 개 요

호주는 자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영상산업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영상산업 지원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세제 지원, 개발 지원 및 투자 지원을 들 수 있다. 둘째는 방송영상산업의 토대가 되는 영상인력의 양성과 교육 및 영상물 아카이브를 통한 제작과정의 지원이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호주산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규제를 통해 호주 방송시장에서 호주산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것이다. 호주의 방송영상산업 지원기구를 정부 차원과 주정부 차원, 그리고 민간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기구별 지원내용을 다음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

5) 이러한 이유로 문화적 색채가 덜 드러나는 다큐멘터리 같은 분야에서 공동제작이 활발히 일어난다.

〈표 2〉 호주의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 지원기구

구분	정부 차원		주정부 차원	민간 차원
지원내용	공동제작 협정 협상 및 관련 정책 수립, 재정적 지원 및 투자	인프라의 구축 (교육 및 영상물 아카이브)	제작 지원 및 홍보	독립제작사에 대한 정보제공, 정부와의 관계에서 이해 대변
지원제도 및 기관	Office For The Arts(OFTA), Screen Australia	Australian Film, Television and Radio School (AFTRS), National Film and Sound Archive(NFSA)	New South Wales(NSW) 등	Screen Producers Association of Australia(SPAA)

2. 국제공동제작 지원제도

(1) 담당기관

1) Office For The Arts(OFTA)

2010년 Gillard 내각이 새로 들어서며, 이전에 환경, 수자원, 전통문화유산과 함께 예술 관련 정책을 관장하던 DEWHA(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Water, Heritage and the Arts)에서 문화·예술 관련 부서가 따로 분리되어 호주 총리실 산하 부서로 Office For The Arts(OFTA)⁶⁾가 새로 출범하게 되었다. OFTA는 호주의 예술, 문화 유산, 영화(공동제작), 저작권 등 문화·예술 관련 정책 수립, 입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호주 토착 예술·문화 지원, 국립예술학교 지원, 내셔널포트레이트갤러리 및 아트뱅크 운영 또한 담당하고 있다.

2) Screen Australia

Screen Australia는 2008년 7월 1일 Screen Australia 법(Screen Australia Act 2008)에 따라 호주영화산업을 관리하던 호주영화위원회(Australian Film Commission)와 호주영화사(Film Australia) 및 호주영화제정공사(Film Finance Corporation)를 통합

6) <http://www.arts.gov.au/>

시켜 만든 기관으로서 호주영화, 방송, 다큐멘터리, 디지털 미디어를 총 관장한다. 호주영화위원회는 영화, 텔레비전, 인터랙티브 미디어 프로젝트와 창작자들을 지원하고, 호주 국민들에게 호주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한편, ‘호주’적 면모를 유지하면서 국제적 범주에서 호주 영상문화의 창작과 발전 및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국가적 정체성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Screen Australia의 주요 활동은 영화와 TV 프로그램 제작·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Screen Australia의 지원사업

지원범주	지원내용
개발 및 제작에 대한 재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본과 기타 사전제작(pre-production)과 관련된 프로젝트 개발 ○ 저예산 제작과 사후제작(post-production) ○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단편 드라마, 쌍방향 미디어의 제작을 통한 현업인들의 전문경력 개발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영상제작물을 가능한 범위의 국내 및 국제시장에 전시 ○ 영상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케팅 전문지식 제공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영상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과 활동에 대한 지원 ○ 세계시장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자와 쌍방향 미디어 제작자들
연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화, 텔레비전, 쌍방향 미디어 산업의 질에 대한 감독과 정보, 분석, 연구 기능 수행

지원사업 중 중요한 분야는 개발에 관한 지원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프로젝트 개발에 관한 부분으로, 호주 영상산업 현업인들에 의해 개발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일이다. 장편,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드라마,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프로젝트의 일부에 대한 지원과 같은 간접 지원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개발은 대본 개발 및 제작자 지원인 일반적인 개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쌍방향성 미디어 프로젝트의 종자자금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두 번째로는 전문가 개발 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

데, 우수한 장·단편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제작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는 제작자, 감독, 작가 및 애니메이션 제작자, 공연자 그리고 기관장들로 하여금 직업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업은 프로젝트의 내용과 양식에 있어 독창성, 다양성 및 창조적 정신을 고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 경우 저예산 프로젝트에만 지원이 이루어진다.⁷⁾

3) OFTA 및 Screen Australia의 공동제작 담당업무

공동제작과 관련해서, OFTA는 공동제작 정책 수립, 협정 체결 대상국가 선정 및 공동제작 협정 협상을 담당한다. 그리고 Screen Australia는 공동제작 프로젝트의 신청 접수·심사 및 지원 관리를 담당하며, 공동제작을 위해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공동제작 가이드라인(INTERNATIONAL CO-PRODUCTION PROGRAM GUIDELINES)의 제작·배포 업무를 수행한다. Screen Australia에서 공동제작을 전담하고 있는 부서는 제작자 환급 및 공동제작부(the Producer Offset & Co-productions Unit)이며, 동 부서의 심사위원회가 공동제작 프로젝트의 지원 여부를 심사한다.

(2) 관련 법규 및 협정

1) Screen Australia 법(Screen Australia Act 2008⁸⁾)

이 법안은 Screen Australia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며, 호주 고유의 프로그램 제작, 홍보, 유통 및 방송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지원사업의 유형과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2) 소득세 평가법(Income Tax Assessment Act of 1997⁹⁾)

호주 소득세 평가법은 소득세 환급 계산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법으로서, 동 법은 호주의 시청각물(영화)의 제작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세 평가법에 따르면, 호주 정부기관과 맺어진 조약 하에 제작된 공동제

7) 이만제 외, 방송영상산업진흥제도 정비방안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pp.196~197, 재정리.

8) <http://www.comlaw.gov.au/Details/C2008A00012>

9)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1C00430>

작물도 호주 자국물로 인정받아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3) 공동제작 협정

OFTA와 Screen Australia는 공동제작 협정의 ‘관할기관’으로 기능하며, 캐나다,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싱가포르, 영국 정부와, 프랑스, 캐나다의 관할기관과의 적법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국가와의 ‘공식적인 공동제작물’은 호주작품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3) Screen Australia의 제작 투자 및 기금 현황

공식적인 공동제작물은 Screen Australia의 제작 투자기금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Screen Australia의 제작 투자기금은 제한되어 있는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호주 측 공동제작자는 투자기금에 지원하기 위해 먼저 임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와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발 지원

호주영화위원회의 영화 발전 프로그램들은 호주영화 실무자들과 영화 프로젝트들의 창작에 있어 독창성, 다양성 및 창조적 열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프로그램들은 연간 프로젝트 창작, 프로덕션 투자, 전문적 개발에 대한 보조 등을 지원하며, 장편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포함한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되어 있다.

2) TV 드라마 투자

Screen Australia는 고품질의 드라마 제작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단, 투자를 받는 드라마는 하나 이상의 일반 텔레비전 외에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에서 시청 가능해야 한다.

3) 공동제작

Screen Australia는 다양한 영상문화 활동을 보조함과 동시에 공식적인 국제공동제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지원을 담당한다. 국제공동제작을 통해 공동제작물로 인정된 작품은 호주 자국물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

4) 마케팅 펀드

마케팅 펀드는 해당 시청각물의 국제 페스티벌, 세미나, 포럼 참가 지원 및 프로모션 지원, 국내 배급지원을 위한 기금이다. 마케팅 펀드는 여행경비 지원을 포함하는데, Screen Australia가 지정한 'A'급 페스티벌에 참가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5) 그 밖의 기금

그 밖의 호주 필름 제작기술의 개발, 발전을 위한 Talent Escalator, 호주 토착민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화를 지원하는 Indigenous Programs,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기반의 영화제작 및 관련 기술의 진흥을 위한 All media 기금 등 Screen Australia는 다양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4) 제작자 환급제(Producer Offset)

제작자 환급은 호주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제작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제도이다. 호주영화뿐만 아니라, 공동제작물 또한 호주 자국물로 인정되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인된 공동제작 프로젝트는 수입세 평가법(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¹⁰⁾에 따라 제작자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 지원할 수 있으며, 호주 자국물 검사(SAC: Significant Australian content)를 면제받는다. 소득세 환급률은 장편영화와 그 외의 영화로 구분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먼저, 호주 장편영화의 경우 제작에 따른 지출의 4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다큐멘터리의 경우 최대 2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공동제작 임시 승인을 받은 공동제작 프로젝트는 자금 조달을 위해 제작자 환급 임시 승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임시 공동제작 승인과 동시에 지원을 진행할 수 있다. 단, 제작자 환급 임시 승인의 경우, 신청비를 지불해야 한다.

공동제작이 완료된 이후에 제작자 환급을 받아야 할 때는 최종 제작자 환급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모든 관련 권한당국으로부터 최종 공동제작 승인을 받았다는 증

10) Division 376(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거를 받지 않는 한 제작자 환급 최종 승인은 부여될 수 없다.

공동제작자는 프로듀서 소득세 환급과 관련하여 먼저 Screen Australia와 협의하여 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IV. 호주의 국제공동제작 가이드라인 및 기 체결 공동제작 협정 분석

조약이란 ‘국가 간에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를 말한다.¹¹⁾ 그리고 기관 간 약정(agency-to-agency arrangement)이란 ‘정부기관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우리 국내법상 자신의 소관업무 내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의미한다.¹²⁾ 이와 같이 기관 간 약정은 조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이나, 호주에서는 시청각 공동제작 MOU의 경우 조약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¹³⁾

호주는 2011년 6월 기준, 캐나다, 중국,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싱가포르, 영국의 8개국과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였고, 프랑스, 뉴질랜드와는 공동제작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0년 6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발효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인도, 덴마크, 말레이시아와 협정문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호주가 체결한 공동제작 협정문 및 양해각서를 다음의 <표 4>에서 비교해 보았다.

11) 외교통상부(2007), p.8.

12) 기관 간 약정의 명칭은 조약의 명칭과 구분하기 위해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약정(Arrangement), 계획서(Plan), 프로그램(Programme) 등을 사용한다.

13) Screen Australia(2011), p.2.

<표 4> 호주의 공동제작 협정문 비교

구 분	호주-싱가포르 (2007)	호주-중국 (2006)	호주-독일 (2001)	호주-아일랜드 (1998)	호주-이스라엘 (1997)
정의	제1조	제1조	제1조	제1조	제1조
권한당국	제2조	제3조	제7조	제3조	-
공동제작 영화 승인	제3조	제10조, 제4조, 제6조, 제5조	제3조	제3조	제3조
제3자 공동제작	제6조	-	제5조	-	-
혜택 부여	제5조	제2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4조
장비 수입	제13조	제7조	제6조(1항)	제5조	제5조
출입국 편의	제12조	제8조	제6조(2항)	제6조	제6조
기여도	제4조(1항, 2항)	부속서 제6조, 제7조	제4조	-	부속서 제4조, 부속서 제5조
야외촬영	제9조	부속서 제2조	부속서 제2조	부속서 제8조	부속서 제1조 (2항, 3항), 제8조
참여	제7조	부속서 제5조	부속서 제4조	부속서 제2조	부속서 제2조
음악과 영상	제10조	부속서 제8조, 제9조	부속서 제5조	부속서 제6조	부속서 제1조, 부속서 제6조
최초 개봉판 제작	제8조	-	부속서 제1조	부속서 제1조(1항)	부속서 제1조(1항)
제작 환경	-	-	-	부속서 제8조	부속서 제8조
사사와 크레딧	제11조	부속서 제11조	부속서 제6조	부속서 제7조	부속서 제7조
조세	제14조	-	-	-	-
균형	제4조(3항, 4항)	부속서 제12조	-	제2조	제2조
부속서의 지위	제15조	-	-	-	-
개정	제16조	제12조	제8조	제10조	제9조
발효	제17조	제13조	제11조	제11조	제10조
존속 및 종료	제18조	제15조	제12조	제12조	제11조

구 분	호주-뉴질랜드 (1994)	호주-이탈리아 (1993)	호주-캐나다 (1990)	호주-영국 (1990)	호주-프랑스 (1986)
정의	-	제1조	제1조	제1조	제1조
권한당국	제9조	제6조	제6조	제6조	제14조
공동제작영화 승인	제2조	-	-	-	제3조
제3자 공동제작	-	부속서 제3조(3항)	부속서 제4조(3항)	부속서 제4조(3항)	-
혜택 부여	제12조, 제4조, 제6조	제2조, 제5조	제2조	제2조	제2조, 제13조
장비 수입	-	제4조	제4조	제4조	제8조
출입국 편의	제7조	-	제5조	제5조	제8조
기여도	제1조	부속서 제7조	부속서 제7조	-	제4조, 제6조
야외촬영	-	부속서 제2조	부속서 제3조	부속서 제3조	부속서 제3조
음악과 영상	-	부속서 제8조, 제9조	부속서 제9조, 제10조	부속서 제9조, 제10조	-
최초 개봉판 제작	-	-	-	부속서 제5조	-
제작 환경	-	부속서 제2조	부속서 제3조	부속서 제3조	-
사사와 크레딧	제10조	부속서 제10조(7항)	부속서 제12조	부속서 제12조	제11조
조세	-	-	-	-	-
균형	-	부속서 제12조	부속서 제14조, 제15조	부속서 제14조, 제15조	-
부속서의 지위	-	-	-	-	-
개정	-	부속서 제14조	부속서 제17조	부속서 제17조	제14조
발효	제4조, 제13조	제7조	제7조	제7조	제15조
존속 및 종료	제13조	제9조	제9조	제9조	제15조

그리고 다음에서는 Screen Australia가 발간한 국제공동제작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공식적인 공동제작물의 제작을 위한 호주의 공동제작 협정의 주요 요건을 살펴보았다.

1. 개요

호주의 국제공동제작 가이드라인에서는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의 국적은 공동제작 협정을 맺은 당사국 출신이어야 하며, 모든 제작과정은 당사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느 한 쪽의 공동제작자가 예산 조달과 창의적인 기여도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모든 공동제작 협정은 공동제작자가 자신이 조달하는 예산에 비례하여 창의적인 기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동제작물을 만드는 데 있어 호주 측 공동제작자가 조달한 예산에 비례하여 호주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지출이 발생해야 한다.

각 권한당국은 공식적인 공동제작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공동제작물이 공동제작 협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며, 공동제작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책임이 있다. 공식적인 공동제작물로 승인되기 위해서 공동제작자는 먼저 예비 승인 심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Screen Australia는 호주의 창의적 기여도를 자국물 테스트(Australian Qualifying Points, AQP)에 따라서 평가한다. 시청각물 제작이 완료되면, 공식적인 공동제작물로 인정받기 위한 최종 승인 심사에 지원해야 한다. 공동제작 상대국의 권한당국이 해당 제작물을 공식적인 공동제작물로 승인해야 Screen Australia 역시 해당 제작물을 공식적인 공동제작물로 최종 승인한다.

2. 자격 규정

공식적인 공동제작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제작 가이드라인과 관련 공동제작 협정문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호주가 체결한 대부분의 공동제작 협정문이 유사한 자격 규정을 담고 있지만, 협정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1) 제작자

각 당사국에서 한 명 이상의 제작자가 공동제작에 참여해야 한다. 호주에서는 책임 프로듀서(executive producer)를 창의적인 역할로 간주하지 않는다. 책임 프로듀서가 기술적, 창의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한 공동제작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출신의

프로듀서도 그러한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공동제작자는 단순한 재정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반드시 창의적인 기여도 해야 한다.

(2) 제작 장소

공동제작 협정문은 공동제작이 반드시 협정 당사국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공동제작 협정문은 공동제작이 이뤄지는 장소가 협정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호주-싱가포르 공동제작 협정문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제3국에서의 촬영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호주와 뉴질랜드가 체결한 공동제작 MOU에서는 공동제작물의 제작 장소와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표 5> 제3국에서의 공동제작 작업 수행 가능 여부

협정 체결국	제3국에서의 공동제작 작업 수행 가능 여부
영국,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가능
캐나다	가능 * 단, 초호인화(answer print) 작업까지만 가능
프랑스	가능 * 단, 배급용 사본의 제작은 각 당사국에서 수행되어야 함
이탈리아	가능 * 단, 배급용 사본의 제작은 재정적으로 최소한의 참여만 한 당사국에서 수행되어야 함
싱가포르	가능 * 단, 기술적으로 제3국에서 수행하려는 공동제작의 작업이 당사국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
뉴질랜드	협정문 내 관련 조항 없음

(3) 야외촬영

호주가 체결한 대부분의 공동제작 협정은 제3국에서의 로케이션 촬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보통 권한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표 6> 제3국 야외촬영을 위한 권한당국 승인 필요 여부

협정 체결국	제3국 야외촬영을 위한 권한당국 승인 필요 여부
캐나다, 중국,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싱가포르, 영국	필요함
프랑스, 뉴질랜드	협정문 내 관련 조항 없음

권한당국의 야외촬영 승인이 있을 경우, 야외촬영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주민을 제한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단, 이들의 역할은 군중 배역처럼 공동제작에 있어 비중이 적다고 판단되는 역할에 한한다.

<표 7> 현지 지역민의 고용 가능 여부

협정 체결국	현지 지역민의 고용 가능 여부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싱가포르	가능
중국, 이탈리아, 영국	가능 * 단, 현지인의 고용조건이 공동제작자의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
뉴질랜드	가능
프랑스	협정문 내 관련 조항 없음

(4) 공동제작자의 국적

공동제작자는 반드시 호주 또는 공동제작 협정의 상대 체결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이어야 한다. ‘영주권자’와 ‘시민’의 정의는 해당 공동제작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다. 단, 야외촬영과 일부 주요 배역(key cast)은 동 조항의 예외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책임 프로듀서나 어시스턴트와 같은 창의적이지 않거나 기술적이지 않은 역할은 공동제작 당사국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

(5) 대본작가

영화대본은 반드시 공동제작 당사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이 작성해야 한다. 공동

제작 협정문에 따라, 당사국이 아닌 제3국 국적의 국민도 영화대본 작성에 기여할 수 있다. 단, 호주 작가조합 또는 유사한 단체가 인정하는 작가의 역할이나 업무를 제3국 국민이 맡을 수는 없다.

〈표 8〉 제3국 국민의 대본 작성 참여 가능 여부

협정 체결국	제3국 국민의 대본 작성 참여 가능 여부
아일랜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가능
프랑스	협정문 내 관련 조항 없음 *이에 대한 판단은 권한당국이 가지고 있음
이탈리아, 독일,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불가능

(6) 주요 배역(key cast)

호주가 체결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동제작 협정에서는 제3국 배우의 캐스팅을 적은 수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다. 단, 대본상 해당 인물의 인종 때문에 제3국 배우의 캐스팅이 필요하거나, 권한당국이 제3국 배우의 캐스팅을 승인하거나, 그 밖의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의 충족은 반드시 서면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호주 측이 전체의 50% 이상의 재정적 기여를 한 공동제작물의 주요 배역 중 최소 1명은 호주 배우가 맡아야 한다.

〈표 9〉 제3국 배우의 캐스팅 가능 여부

협정 체결국	제3국 배우의 캐스팅 가능 여부
이탈리아, 독일, 아일랜드, 이스라엘,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가능
캐나다	가능 * 단, 국제적인 명성을 지닌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
프랑스	협정문 내 관련 조항 없음

(7) 재정적, 창의적 기여도

호주의 공동제작물에 대한 최소 기여도는 공동제작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다. 최소 참여 수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창의적 또는 재정적 기여도의 20%에서 30%를 말하며, 이러한 최소 참여 수준은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와 창의적 기여에 모두 적용되어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Screen Australia의 국제공동제작 가이드라인은 재정적 기여와 창의적 기여 간의 균형에 대해 약간의 오차를 허용한다. 이러한 오차는 5% 수준에서 허용된다. 그러나 재정적 기여도와 창의적 기여도는 모두 최소 참여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표 10〉 최소 기여도

협정 체결국	최소 기여도
캐나다, 이탈리아, 영국	30%
중국, 아일랜드, 이스라엘, 싱가포르	20%
프랑스	호주: 40~80% 프랑스: 20~60%
독일	30% * 단, 3개 국가 간의 공동제작일 경우 최소 참여 수준을 20%로 한다.
뉴질랜드	협정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8) 호주산 제품 및 서비스 지출 의무

호주 측 공동제작자가 조달한 예산 비율만큼 공동제작물 제작 과정에서 호주산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예산이 지출되어야 한다. 호주산에 대한 지출은 캐스팅, 제작진, 설비 및 관련 장비, 호주 측 인력의 일비, 교통비, 숙박비를 포함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함에 있어 약간의 오차는 허용될 수 있다. 지출에 대한 오차는 호주 측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도의 -5%에서 +15%까지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주 측의 재정적 기여도가 60%라면, 호주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전체 예산의 55%에서 75%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9) 공동제작자 간 협약

모든 공동제작은 공동제작 당사자 간에 합의된 협약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약에서는 관련 권리와 당사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협약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세부 요건은 해당 당사국 간에 체결된 공동제작 협정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¹⁴⁾

3. 창의적 기여도 포인트 테스트

(1) 호주 자국물 인정 포인트(Australian Qualifying Point, AQP)

호주 자국물 인정 포인트는 공동제작에서 호주 측 공동제작자의 창의적 기여도를 산출하는 테스트로서, 공동제작물이 호주 자국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AQP가 공동제작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여도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

AQP는 호주의 공동제작에 대한 재정적 기여도와 같은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호주 측이 공동제작물의 제작비의 절반 이상을 기여하였을 때, AQP 역시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단, AQP와 재정적 기여도 간에 5%의 차이는 허용된다. 예를 들어, 호주 측의 재정적 기여도가 60%인 경우, AQP는 55%부터 65%까지만 달성하면 된다.

AQP의 점수는 공동제작에 참여한 각각의 주요 역할(예를 들어, 감독, 배우 등)에 포인트를 부여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프로듀서’에게는 포인트가 부여되지 않는다. 이는 공동제작에서 프로듀서는 각 체결국에서 반드시 1명씩 참여해야 하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포인트의 분할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TV 시리즈 제작에 각 공동제작 국가의 작가가 참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각 공동제작 국가의 언어로 제작되는 리보이싱 또는 내레이션 역할에 부여되는 포인트는 분할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이스 캐스팅의 경우 3점을 할당 받게 된다. 따라서 애니메이션의 경우 보이스 캐스팅이 호주 및 상대 체결국에서 각각의 언어로 이루어지는 경우, AQP는 1.5점을 달성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장편영화와 TV 드라마의 경우, 작품제작에서 호주 측의 재정적 기여도가 50% 이상일 경우, 최소한 네 개의

14) 자세한 내용은 아래 “5. 공동제작자 간 협약” 참고.

주요 역할 중 한 개는 반드시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주요 역할 중 1포인트 이상은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테스트의 적용

장편영화, TV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의 공동제작에는 각각의 장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제작 역할 구성에 맞는 다양한 포인트 테스트가 적용된다. 각각의 테스트는 필수 포인트(compulsory point)와 선택 포인트(discretionary point)로 나뉘어 해당 역할에 할당하고 있는데, 필수 포인트는 호주 공동제작자가 반드시 해당 포인트를 달성해야 하는 의무적인 포인트이고, 선택 포인트는 호주 측 공동제작자가 해당 역할 범위 내에서 해당 역할 만큼만 포인트를 얻게 된다. 단, Screen Australia는 호주 측 공동제작자가 선택한 역할이 포인트를 주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포인트를 동 역할에 부여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다.

포인트 테스트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그 밖의 다른 창의적 역할에 대한 포인트도 있는데, 이러한 포인트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한 권한은 Screen Australia가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공동제작물이 무협영화일 경우, 액션 코레오그래퍼 역할에게, 뮤지컬일 경우 뮤지컬 디렉터 또는 코레오그래퍼에게, 포인트가 부여될 수 있다.

(3) 장르별 포인트 할당(Point values)

〈표 11〉 장편영화 및 TV 드라마 포인트 할당표

필수 포인트	
작가	2
감독	2
촬영감독	1
편집자/사진 편집자	1
배우 *반드시 4명 중 1명 이상의 배우는 호주인이어야 한다.	4
소계	10포인트

선택 포인트	
작곡가	1
의상 디자이너	1
프로덕션 디자이너	1
대본 편집자	1
사운드 디자이너	1
기초 작업	1
VFX 감독	1
그 밖의 다른 주요 역할(크로노그래퍼, 특수분장 등)	1
소계	5포인트(위 8개 중 5개 선택)
합계	15포인트

<표 12> 다큐멘터리 포인트 할당표

필수 포인트	
작가	2
감독	2
촬영감독	1
편집자/사진 편집자	1
소계	6포인트
선택 포인트	
작곡가	1
조사원	1
내레이터	1
사운드 디자이너, 녹음기사, 사운드 편집자 또는 믹싱 담당	1
기초 작업	1
그 밖의 다른 주요 역할(수중 촬영감독, 아트디렉터, VFX 감독 등)	1
소계	4포인트(위 6개 중 4개 선택)
합계	10 포인트

〈표 13〉 애니메이션(2D/3D)

필수 포인트	
작가	2
감독/애니메이션 감독	2
캐스팅	3
키 애니메이터	1
스토리보드 작가	1
소계	9포인트
선택 포인트	
편집자/사진 편집자	1
백그라운드 아티스트	1
작곡가	1
사운드 디자이너	1
기초 작업	1
키 모델 디자이너	1
보이스 디렉터	1
그 밖의 다른 주요 역할 (3D 모델러, 디지털컴포저, 프리비스(Previs) 애니메이터 등)	1
소계	4포인트(위 8개 중 4개 선택)
합계	13 포인트

4. 지원절차 및 심사

호주 공동제작자는 Screen Australia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지원양식을 작성하고, 이를 관련 첨부 문서와 함께 동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상대국 공동제작자 역시 별도로 자국의 권한당국에 공동제작 신청을 해야 한다. 공동제작 협정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공동제작에 대한 승인은 호주 측 권한당국 및 상대 체결국의 권한당국 모두에게서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 Screen Australia는 자격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모든 관련 권한당국과 협의를 한다.

일반적으로 Screen Australia의 제작자 환급 및 공동제작 위원회(Producer Offset and Co-production Committee, 이하 공동제작 위원회)에서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6주이며,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공동제작 프로젝트는 새로 지원해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임시 승인(Provisional Approval)

재정에 대한 심사가 통과된 후 공동제작자는 임시 승인을 받기 위해 지원할 수 있다.¹⁵⁾ 다만, 이는 사전제작 단계가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임시 공동제작 승인은 <표 14>에서 정리한 Screen Australia의 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부여되며, 상대국 권한당국과 본 사안에 대해 협의가 이뤄진다.

<표 14> 임시 승인 요건

- 가. 각 당사국에서 프로듀서가 공동제작에 참여해야 한다.
- 나. 공동제작자의 의무사항과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공동제작자 간 협약이 최소한 초안형태라도 존재해야 하며, 양측 국가 간에 체결된 공동제작 협정문의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 다. 제3국 공동제작자의 최소 기여도를 포함한 각 당사자의 재정적 기여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 라. AQP에 근거하여, 호주 측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도와 창의적 기여도가 적절하게 비슷한 비율이어야 한다.
- 마. 호주 측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기여만큼 호주산 제품 및 서비스에 제작비가 지출되어야 한다.

임시 승인은 2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안에 촬영이 시작되어야 한다. 만약 2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도 본격적인 촬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프로젝트는 진행되어야 할 경우, 새로운 임시 승인을 받기 위한 지원을 해야 한다.

15) 임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동제작자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신들의 프로젝트가 공식적인 공동제작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경우 호주 측 공동제작자는 Screen Australia에게 예비 승인 서한(Letter of preliminary compliance)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승인 서한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도 각 공동제작자가 지출 및 조달할 예산 비율, 창의적 기여도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예비 승인 서한은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며, 제작자 환급제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지도 않는다.

임시 승인을 받은 공동제작 프로젝트는 Screen Australia의 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제작자 환급을 받기 위한 자국물 테스트(SAC)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제작자 환급제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동제작 협정의 준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또는 창의적 기여도에 있어서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Screen Australia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종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 최종 승인(Final Approval)

공동제작물이 완성되면 공동제작자는 공식적인 공동제작물의 지위를 얻기 위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동제작 협정에 따라 공동제작물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일반 관중에게 공동제작물을 공개할 수 있는 합당한 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호주 측 공동제작자는 집행된 모든 자금조달 협정, 완성된 공동제작물의 DVD 사본, 최종 예산안, 캐스팅·제작진 리스트 및 Screen Australia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승인에 대한 결정은 호주와 상대국의 권한당국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또한 제작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종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

5. 공동제작자 간 협약

공동제작 협정에서는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청각물이 공식적인 공동제작물로 승인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모든 공동제작 협정문에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규정으로는 첫째, 각 공동제작 협정문은 공동제작자의 재정적 책임에 대하여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이러한 재정적 책임은 권한당국에 의해 조건부 공동제작 승인이 거부된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과, 조건부 공동제작 승인을 얻었지만 그러한 승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청각물의 제작비용, 마지막으로 승인된 공동제작물의 공공상영 허가가 보류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둘째, 공동제작 협약은 반드시 상호 합의된 크레딧 기재 방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호주 상영 시 ‘호주-[상대 국가 명] 공동제작’, 상대국에서 상영 시 ‘[상대 국가 명]-호주 공동제작’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셋째, 공동제작 협약은 제작에 사용된 네거티브, 인터네거티브, 디지털 매체 등 최종 보호 및 재생산용 자료(final protection and reproduction material)의 사본을 모든 공동제작자를 위해 충분히 제작하도록 규정한다. 각 공동제작자는 공동제작 협약을 통해 최종 보호 및 재생산용 자료 사본의 소유권을 인정받으며, 필요할 경우 재생산을 위해 최종 보호 및 재생산용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공동제작자는 공동제작자 간에 합의된 조건 하에 원본제작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동제작 협약은 공동제작물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수입액의 분배와 관련된 규정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제작에 대한 각각의 기여가 완료되는 날짜를 명시하고, 저작권의 분배에 관련된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모든 공동제작 협약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호주가 체결한 공동제작 협정문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주로 혜택의 양도와 관련한 조항인데, 그 내용을 협정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공동제작 협정별 추가적인 규정

협정 체결국	추가적인 규정
캐나다	○ 해당사항 없음
싱가포르, 이스라엘	○ 당사국 국민 외의 사람에게 그들의 혜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
중국	○ 중국 국민 외의 사람에게 그들의 혜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
이탈리아	○ 상대국의 약속 불이행, 공동제작 승인 거부 또는 공동제작물의 공공상영의 보류에 따르는 분쟁해결을 위한 절차를 명시해야 함 ○ 수출시장 및 수출에 따른 이윤의 분배와 관련된 규정을 명시해야 함
영국, 아일랜드	○ 당사국 국민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 외의 사람 또는 유럽공동제작총회가 아닌 곳에 그들의 혜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
독일	○ 공동제작 협정문은 당사국 국민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민 외의 사람 또는 유럽공동제작총회가 아닌 곳에 그들의 혜택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음 ○ 당사국 또는 상대국의 자국물로서 영화제에서 상영될 수 있음

V. 결 론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는 UR 협상 당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에 대한 MFN 면제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 챗터, 부속서, 의정서 등 형식에 상관없이 FTA 틀 내에서 공동제작 협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공동제작 협정 상대국에게 배타적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호주의 경우에는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에 대해 MFN 면제를 신청하여 그러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호주는 공동제작 협정에 적극적인 입장임으로 FTA 틀 내에서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와의 공동제작 협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무엇보다 제작자 환급제를 받기 위한 문화적 테스트인 호주 자국물 검사를 면제받는 것이다. 제작자 환급제는 호주의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액에 대해 일부를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장편영화의 경우, 기본적으로 호주 현지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우수 호주 영상물 제작 지출액의 40%를 환급해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다큐멘터리의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환급해준다. 영화의 주제가 특정장소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장소 촬영을 위해 호주 거주자에 대해 지불한 지출액도 환급 대상이 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09년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호주와의 방송콘텐츠 교역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호주에 수출한 한국 방송콘텐츠의 액수는 매우 적어서 집계가 되지 않았으며, 호주 방송콘텐츠의 수입 역시 4천 달러에 불과하다.¹⁶⁾ 호주와의 공동제작 협정이 체결되면 제작자 환급제와 같은 호주 정부의 공식적인 공동제작물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양국 간 공동제작이 활성화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주와의 공동제작 협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호주가 체

16) KOCCA(2010)

결하는 공동제작 협정문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조항 중에 하나인 노동조건¹⁷⁾ 조항과 같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잘 맞지 않을 수 있는 조항들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협정문안을 마련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윤선희 (1999), “다매체시대 영상산업의 문호개방과 국제공동제작 연구”, 한국방송진흥원.
- 윤재식 외 (2007), “국제공동제작: 글로벌 문화교류의 확장”,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외교통상부 (2007), “알기 쉬운 기간 간 약정업무”.
- 이만제 외 (2003), “방송영상산업진흥제도 정비방안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 KOCCA (2010), ‘2009년 방송콘텐츠 수출입 현황’, 《KOCCA FOCUS》, 10-91 통권 제1호, 2010. 2.
- Hoskins, McFadyen & Finn (1997), “Global Television and Film”, Oxford University Press.
- Screen Australia (2011), “INTERNATIONAL CO-PRODUCTION PROGRAM GUIDELINES”.
- 외교통상부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 ComLaw 홈페이지(호주법령) <http://www.comlaw.gov.au/>
- Office For The Art(OFTA) 홈페이지 <http://www.arts.gov.au/>
- Screen Australia 홈페이지 www.screenaustralia.gov.au/
- 호주-남아프리카공화국 공동제작 협정문

17) 호주가 이스라엘과 아일랜드 등과 체결한 공동제작 협정문에 삽입된 조항으로 공식적인 공동제작물을 제작하는 데 있어 양 당사국 내의 노동조건이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을 당사국이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호주-뉴질랜드 공동제작 양해각서
호주-독일 공동제작 협정문
호주-싱가포르 공동제작 협정문
호주-아일랜드 공동제작 협정문
호주-영국 공동제작 협정문
호주-이탈리아 공동제작 협정문
호주-중국 공동제작 협정문
호주-캐나다 공동제작 협정문
호주-프랑스 공동제작 양해각서